

請願書を 못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남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앞으로 약 한 1年 半 동안 財務經濟委員會를 맡고,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적어도 남은 여덟 名 委員들은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저버리지 말고 철저히, 우리가 委員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, 우리가 할 수 있는 義務를 다해서 앞으로 監視하고, 千百萬 서울市民의 權利를 위하고, 또 稅外收入을 늘려서 稅金에 輕減을 주는 이런 역할을 다한다는 다짐을 갖고, 오늘 이런 마음을 각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

이상입니다.
○委員長 文錫珍 여전히 우리 자리가 아직 차지를 못해서 이제 다른 意見이 없으면 散會를 宣布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散會를 宣布하기 전에 梁敬淑委員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, 또 金信浩委員께서 찬성해주신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이 議決定足數 부족으로 表決까지 가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, 이 案에 대해서 따로 읽지는 않지만 會議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

그래서 議決定足數 부족으로 우리가 지금 議決을 거치지 못한 처음 提出했던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은 따로 낭독하지 않더라도 速記錄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
(參 照)

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(이하 "금고"라 한다.)의 선정과 기타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금고지정) 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금고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법 제3조의

금융기관으로 한다.

③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, 일반회계는 회계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1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다.

제 3 조(계약방식)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하여야 한다.

②서울특별시장은 금고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등 기준을 정하여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개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(계약기간) 서울특별시금고의 계약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. 다만, 금고운영상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.

제 5 조(금고 선정기준) 서울특별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대내외적인 신용도
2.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
3.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도
4.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
5.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
6. 서울특별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
7.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 6 조(여유자금 운용원칙) 서울특별시장은 여유자금운용시 안정된 금융상품에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률 예측이 곤란한 금융상품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7 조(개인신용정보의 보호) 금고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금고는 공금을 취급함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누설, 감실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동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

개인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8 조(자금운용 상황보고) ①서울특별시 금고는 공금예금운용상황을 월별, 분기별, 연도별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서울특별시장은 공금예금운용상황을 월별, 분기별, 연도별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보고서에는 거래금융기관, 예금과 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총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위임 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○委員長 文錫珍 늦은 時間까지 出席해 주셔서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신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이것으로서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散會를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22時 33分 散會)

○出席委員

文錫珍	鄭水華	李亮漢
郭順英	金廣洵	金信浩
金洪奎	白南善	梁敬淑
李廷義	黃仁明	金相男
金勝建	盧載東	朴南植

○專門委員

安錫洙